
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-767호(2026.3.12.)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3일

중랑구청장

1.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: 2개소

- 지정기간: 2026년 4월 4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

대상 지역	면적(m ²)		
	기지정	재지정	비고
중화동 122번지 일대	70,448	70,448	공공재개발
면목동 174-1번지 일대	35,969.7	35,969.7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

2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도지역		면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m ² 초과
	상업지역	15m ² 초과
	공업지역	15m ² 초과
	녹지지역	20m ²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m ² 초과

3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서울부동산정보광장(land.seoul.go.kr)에서 확인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4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122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